



# 대구대학교와 국립재활원의 상호협력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국립재활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함)은 재활분야의 의료, 교육, 연구개발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 양성,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인력·시설·실험실습기자재 등의 활발한 교류와 공동활용을 통해 재활분야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양 기관은 포괄적인 재활분야의 의료, 교육, 연구 개발에 상호 협력하며 전문인력을 교류하고 시설 및 서비스를 공동 활용한다.

2. 양 기관은 재활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의 발굴 및 수행, 상대 기관 연구 사업에 참여 및 상대 기관의 위탁 연구를 활성화한다.

3. 시설 및 장비 사용 등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,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4.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한다.

제 3 조(협약의 이행) 양 기관은 신의성실과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하고 상호협약에 의하여 협력분야를 점진적으

로 확대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되, 양 기관의 제 규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다.

제 4 조(보안 및 해석) 양 기관은 본 협약 이행 중 지득한 상대방의 각종 업무상의 기밀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·배포하지 않는다. 본 협약서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5 조(비용) 본 협약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제2조 3호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.

제 6 조(효력 및 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, 서명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. 12. 1.



대구대학교  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NRC 국립재활원  
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

원장 허용

허용

서울시 강북구 가오리길 111